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 6. 14 선고 2021가단5188734 판결 [사해행위취소]

---

## 전 문

원 고 A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종항

소송복대리인 공익법무관 김계원

피 고 1. B

2. C

피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천형욱

피고들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정형준

변 론 종 결 2022. 5. 17.

판 결 선 고 2022. 6. 14.

## 주 문

1.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소를 각하한다.
2. 원고의 피고 C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N

## 청 구 취 지

1. 가. 피고 B와 D 사이에 별지 목록 1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20. 2. 19. 체결된 증여계약을 19,900,000원의 범위 내에서 취소한다.

나. 피고 B은 원고에게 19,900,000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가. 피고 C와 D 사이에 별지 목록 2, 3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20. 3. 26. 체결된 증여계약 및 2019. 12. 13.자, 2019. 12. 20.자, 2020. 1. 7.자, 2020. 1. 28.자, 2020. 2. 21.자, 2020. 3. 25.자, 2020. 3. 31.자 각 증여계약을 117,500,000원의 범위 내에서 취소한다.

나. 피고 C는 원고에게 117,500,000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이 유

###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D이 대표자로 있는 사단법인 E에서 2016. 5. 6.부터 현재까지 근무하고 있으나, 근무 시작 당시부터 2020. 10.경까지 임금 합계 134,596,774원을 받지 못했다.

나. D은 2020. 3. 27. 원고에게 2016. 5.말부터 2020. 3.말까지 원고가 받아야할 임금 117,500,000원 중 위 사단법인이 미지급한 임금의 1/2은 2020. 6. 30.까지, 나머지는 2020. 9. 29.까지 지급하겠다는 내용의 임금체불확인서를 작성해주었다.

다. 원고는 위 사단법인과 D을 상대로 임금 청구의 소(서울중앙지방법원 2021가단5017634)를 제기하여 2021. 3. 23. ‘위 사단법인과 D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34,596,774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받았고, 이는 그대로 확정되었다.

라. D은 2020. 2. 19. 자녀인 피고 B에게 별지 목록 1 기재 부동산(이하 ‘1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같은 날 증여(이하 이에 관한 계약을 ‘1 증여계약’이라 한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피고 B은 2020. 4. 29. 1 부동산에 관하여 채무자 피고 C, 근저당권자 F조합, 채권최고액 1,690만 원으로 된 근저당권설성등기를 마쳤다.

마. D은 2020. 3. 30. 처인 피고 C에게 별지 목록 2 기재 부동산(이하 '2 부동산'이라 한다), 3 기재 부동산(이하 '3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같은 달 26. 증여(이하 이에 관한 계약을 '2 증여계약'이라 한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피고 C는 2020. 7. 14. G에게 2 부동산을 8,365만 원에 매도하고 2020. 8. 4.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고, 2020. 7. 14. H에게 3 부동산을 6,958만 원에 매도하고 2020. 8. 4.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바. 피고 C는 2020. 5. 28. D과 협의이혼 하였다.

사. D의 채권자 I는 1 증여계약이 사해행위라는 이유로 피고 B을 상대로 사해행위취소청구의 소(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21가단11334)를 제기하여 2021. 6. 28. '피고 B은 D에게 1 부동산에 관하여 2021. 1. 12. 사해행위취소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한다.'는 화해권고결정을 받았고, 이는 그대로 확정되었다. 이에 따라 2021. 7. 22. 1 부동산에 관하여 D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에서 5호증, 을 제1에서 3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 2. 피고 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 가. 원고의 주장

1 증여계약은 사해행위로 취소되어야 하는데, 이후 F조합 명의의 채권최고액 1,690만 원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었다. 1 부동산의 가액은 3,680만 원(=평당 40만 원 × 92평)이므로, 근저당권 채권최고액 1,690만 원을 공제하면 1 부동산의 실제 가치는 1,990만 원이다. 따라서 1 증여계약은 1,990만 원의 범위 내에서 취소되어야 하고, 피고 B은 가액배상으로 원고에게 1,990만 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 나. 권리보호의 이익 여부에 관한 판단

여러 명의 채권자가 동시에 또는 시기를 달리하여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청구의 소를 제기한 경우 이들 소가 중복제소에 해당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어느 한 채권자가 동일한 사해행위에 관하여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청구를 하여 승소판결을 받아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는 것만으로는 그 후에 제기된 다른 채권자의 동일한 청구가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게 되는 것은 아니고, 그에 기하여 재산이나 가액의 회복을 마친 경우에 비로소 다른 채권자의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청구는 그와 중복되는 범위 내에서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게 된다(대법원 2005. 11. 25. 선고 2005다51457 판결 등 참조).

그런데 기초사실에서 본 바와 같이 D의 다른 채권자 I가 피고 B를 상대로 사해행위취소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승소하였고, 이에 따라 1 부동산에 관하여 다시 D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으므로,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청구는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다. 따라서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 볼 필요 없이 받아들이지 않는다.

### 3. 피고 C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 가. 당사자의 주장

##### 1) 원고

2 증여계약은 사해행위로 취소되어야 하는데, 이후 피고 C는 2 부동산은 8,365만 원에, 3 부동산은 6,958만 원에 제3자에게 매도하였고, 증여 당시 2, 3 부동산에 수개의 공동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다가 이후 말소되었다. 또한 D은 피고 C에게 2019. 12. 13. 600만 원, 2019. 12. 20. 100만 원, 2020. 1. 7. 600만 원, 2020. 1. 28. 600만 원, 2020. 2. 21. 180만 원, 2020. 3. 25. 10만 원, 2020. 3. 31. 200만 원, 합계 2,290만 원을 송금하는 방법으로 증여하였는데, 이는 사해행위로 취소되어야 한다. 따라서 2 증여계약과 위 돈 증여계약은 원고의 피보전채권액인 1억 1,750만 원의 범위 내에서 취소되어야 하고, 피고 C는 가액배상으로 원고에게 1억 1,750만 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 2) 피고 C

2 증여계약은 증여가 아니라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이고, 위 돈은 서울에서 따로 방을 얻어서 생활하고

있는 자녀들의 월세, 생활비, 학원비 등으로 피고 C가 증여 받은 것이 아니므로, 모두 사해행위가 아니다.

#### 나. 판단

1) 우선, D의 무자력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을 제2, 3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D에게 2, 3 부동산 외에도 다른 부동산들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갑 제1에서 9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D이 무자력임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2) 또한 2 증여계약은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로 볼 수 있다. 그런데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은 혼인 중 쌍방의 협력으로 형성된 공동재산의 청산이라는 성격에 상대방에 대한 부양적 성격이 가미된 제도임에 비추어, 이미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이혼을 하면서 배우자에게 재산분할로 일정한 재산을 양도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일반 채권자에 대한 공동담보를 감소시키는 결과로 되어도, 그 재산분할이 민법 제839조의2 제2항의 규정 취지에 따른 상당한 정도를 벗어나는 과대한 것이라고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할 것은 아니고, 다만 상당한 정도를 벗어나는 초과 부분에 대하여는 적법한 재산분할이라고 할 수 없기 때문에 이는 사해행위에 해당하여 취소의 대상으로 될 수 있을 것이나, 이 경우에도 취소되는 범위는 그 상당한 정도를 초과하는 부분에 한정하여야 하고, 위와 같이 상당한 정도를 벗어나는 과대한 재산분할이라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다는 점에 관한 입증책임은 채권자에게 있다(대법원 2000. 9. 29. 선고 2000다25569 판결 참조).

갑 제1에서 10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위 재산분할이 상당한 정도를 벗어나는 과대한 것이라고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피고 C와 D의 이혼은 가장이혼이라고 주장하나, 갑 제9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갑 제6, 7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D이 피고 C에게 2019. 12. 13. 600만 원, 2019. 12. 20. 100만 원, 2020. 1. 7. 600만 원, 2020. 1. 28. 600만 원, 2020. 2. 21. 180만 원, 2020. 3. 25.

10만 원, 2020. 3. 31. 200만 원, 합계 2,290만 원을 송금한 사실은 인정되나, 위 증거들만으로는 D이 피고 C에게 위 돈을 증여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피고 C에 대한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 볼 필요 없이 받아들이지 않는다.

####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고, 피고 C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판사 조규설

별지